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6.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가. 구미추모공원(가칭)이 2016년 하반기 중 개원 예정임에 따라 화장시설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나. 공설묘지 및 공설송조당 운영 관련 법 개정사항과 기존 조례의 미비점이 반영된 통합 조례를 제정하여 장사시설 운영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 다. 장사시설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최상의 장사서비스를 제공하여 선진 장사문화를 조기 정착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장사시설의 명칭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 구미추모공원, 구미시공설송조당, 유택동산 등
- 나. 장사시설 사용료 및 감면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
 - 구미추모공원 사용료 (단위: 원)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관내	관외	
화장시설	일반사체	15세 이상(1구)	100,000	600,000	
		15세 미만(1구)	80,000	350,000	
	죽은태아(1구)		40,000	170,000	
	개장유골(1구)		60,000	250,000	
유택동산	1구		10,000	10,000	

- 옥성면주민 구미추모공원과 유택동산 사용시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 다.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안 제11조)
 -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거나 사용허가 취소시 남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 반환

라. 장사시설의 위탁운영 규정(안 제15조)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에 위탁 가능

마. 송조당 봉안대상자 범위 확대(안 제19조)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관외에 있는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하여 봉안하거나 개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
- 기존에 안치된 배우자와 같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바. 송조당 사용기간 단축(안 제20조)

구분	최장 사용기간	최초 안치기간	안치연장		비고
			기간	횟수	
기존	60년	15년	15년	3	
변경	45년	15년	15년	2	△15년

사. 기존 조례 폐지(안 부칙 제2조)

- 구미시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
- 구미시공설송조당 설치 및 사용 조례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2) 「지방공기업법」 제76조
- 3) 「민법」 제32조 및 제1000조
-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미시가 설치한 장사시설의 사용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을 말한다.
2. “구미추모공원”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구미시공설승조당”이란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구미시공설묘지”란 시가 일정한 구역에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5.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을 산골(散骨)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사용권”이란 장사시설 사용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한 경우에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사용권자”란 사용권을 득한 사람을 말한다.
7. “사용자”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및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인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장사문화 개선 등) ① 시장은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봉안·자연장의 확산장려 및 장사시설의 확충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 등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분석·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분석·연구 등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장사시설 관리 및 운영

제5조(사용허가 등)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에 관한 세부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장사시설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권의 소멸 및 매매 등 금지) ① 구미시공설묘지(이하 "공설묘지"라 한다)또는 구미시공설충조당(이하 "충조당"이라 한다)에서 시신 또는 유골을 반출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권은 소멸된다.

②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시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및 그 상속인에게 주어지고, 타인에게 매매·양도·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 제2조제16호에서 정한 연고자 간의 명의 변경

2. 법 제2조제16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자를 법 제2조제16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의 명의 변경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제6조제2항, 제8조, 제14조, 제20조,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장사시설의 신설·증설·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장사시설 설치지역에 대한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미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자의 신고의무) 공설묘지 또는 송조당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9조(사용료 등)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설묘지의 경우 구미시민이 아닌 사용자로부터는 정해진 금액의 배액을 더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등은 관내와 관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관내와 관외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③ 공설묘지와 승조당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등을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분묘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은 공설묘지 사용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 중 구미추모공원(이하 “추모공원”이라 한다)과 유택동산 사용료등을 전액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3. 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조당 사용료등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단, 최초 1회에 한정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③ 추모공원이 위치한 옥성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 후 장사시설 중 추모공원과 유택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등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④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승조당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안치된 유골을 인도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등을 별표 4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안치 전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해지할 경우에는 사용료등의 전액을 반환한다.

② 제25조의 경우로써 매장전의 경우에 한정하여 이미 납부한 사용료등의 전액을 반환한다.

제12조(화장유골의 처리) 추모공원에서 화장한 유골은 봉안시설에 안치하거나 유택동산에 산골하여야 하며 그 외의 지역에 산골(散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금지행위) 장사시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
4.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하거나 오물을 투기하는 행위
5.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 미풍양속에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

제14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시장은 사용자가 장사시설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명할 수 있다.

제3장 장사시설의 위탁운영 및 지도감독 등

제1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이나 장사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장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장사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사용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제15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재와 경비를 수탁시설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설물을 증축·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장사시설의 관리·운영에 사용하던 각종 대장, 부책, 시설, 장비, 비품 등을 모두 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7조(시정명령 및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리·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제1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업무의 이행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에 따른 장부·서류·시설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바로 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공설송조당

제19조(봉안의 대상) ① 송조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시 주민등록이 시 또는 경상북도로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 포함)
2. 사망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 있는 사람
3. 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4. 개장 전 분묘소재지 또는 봉안소재지가 시 또는 경상북도인 유골
5.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관외에 있는 부모·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하여 봉안하거나 개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
6. 기존에 안치된 배우자와 같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단, 법적 배우자에 한함)
7.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망자

② 안치하는 유골은 반드시 화장한 후 분골된 것이라야 한다.

제20조(사용기간) ① 유골의 안치 기간은 무연고 유골은 15년으로 하며 이후 연고자가 기간연장을 요구할 때에는 한 번에 15년씩 2회에 한정하여 연장해 줄 수 있다.

② 무연고 유골은 안치된 날로부터 10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송조당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 이내에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봉안기간이 종료된 유골의 처리) ① 시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경과한 후에 3회에 한정하여 연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최종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간 연장신청이 없거나, 유골인도 신청을 아니한 경우에는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 및 영 제9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유골의 인도) 송조당 사용자가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유골인도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유골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5장 공설묘지

제23조(매장의 대상)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자
2.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분묘의 개장에 따른 유골
3. 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4.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망자

제24조(사용면적) 공설묘지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이하로 한다.

제25조(사용장소의 반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개장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공설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는 그 사용자는 지체 없이 이를 원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26조(사용표지 및 묘표의 설치) ① 사용자가 분묘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묘비를 세우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묘비 등 시설물의 설치는 영 제23조에 따른다.

제27조(분묘의 설치기간 등) ①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하되 설치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사용권자가 해당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8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① 제27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고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화장·봉안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봉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0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구미시공설묘지설치및
사용조례」, 「구미시공설송조당 설치 및 사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사용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장사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위탁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수탁 협약에
따라 위탁운영중인 장사시설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계약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장사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제3조 관련)

구 분	명 칭	소 재 지
묘지	구미시 옥계공설묘지	구미시 옥계동 511번지(1,045㎡) 구미시 옥계동 512번지(1,861㎡) 구미시 옥계동 513번지(1,438㎡) 구미시 옥계동 산 5-1번지(14,082㎡) 구미시 옥계동 산 6-1번지(10,413㎡) 구미시 옥계동 산 108번지(3,091㎡)
	구미시 선산공설묘지	구미시 선산읍 봉곡리 산41번지(17,058㎡) 구미시 선산읍 봉곡리 산42번지(11,901㎡) 구미시 선산읍 봉곡리 산43번지(21,421㎡) 구미시 선산읍 봉곡리 산44번지(18,248㎡)
봉안시설	구미시 공설송조당	구미시 옥성면 선상동로 419
화장시설	구미추모공원	구미시 옥성면 농소리 산 77-1번지

[별표 2]

장사시설별 사용료 (제9조 관련)

1. 공설묘지 (30년)

(단위: 원)

명 칭	사용료		관리비	
	기준	금액	기준	금액
구미시 옥계공설묘지	1제 곱 미 터	24,000	기 당1년	2,000
구미시 선산공설묘지	1제 곱 미 터	24,000	기 당1년	2,000

※ 구미시민이 아닌 사용자로부터는 소정금액의 배액을 가징한다.

2. 공설송조당 (15년간)

(단위: 원)

구분 실별	구미시민			타지역			비 고
	계	사용료	관리비	계	사용료	관리비	
일 반 실	120,000	80,000	40,000	300,000	220,000	80,000	
무 연고실	60,000	40,000	20,000	150,000	110,000	40,000	
외국인실	120,000	80,000	40,000	300,000	220,000	80,000	

3. 구미추모공원

(단위: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관내	관외	
화장시설	일반 사체	15세 이상(1구)	100,000	600,000	
		15세 미만(1구)	80,000	350,000	
	죽은태아(1구)		40,000	170,000	
	개장유골(1구)		60,000	250,000	
유택동산	1구		10,000	10,000	

※ 죽은 태아는 사산증명서를 발급받은 태아를 말한다.

[별표 3]

구미추모공원 사용료 관내·관외 구분 (제9조 관련)

구 분	관 내	관 외	비고
일반사체	사망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사람	사망일 현재 구미시 이외 지역에 주민 등록을 두고 사망한 사람	
죽은태아	사산일 현재 산모가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산일 현재 산모가 구미시 이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개장유골	개장신고일 현재 기존 분묘 및 봉안의 소재지가 구미시 지역인 경우	개장신고일 현재 기존 분묘 및 봉안의 소재지가 구미시 이외 지역인 경우	
무연고 사망자	사망자의 최초 발견 장소가 구미시 지역인 경우	사망자의 최초 발견 장소가 구미시 이외의 지역인 경우	

※ 일반사체의 경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태아 및 영아는 그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4]

공설송조당 사용료 반환기준(제11조 관련)

단계별	사용기간	환급률(%)
1	6개월 이내	75
2	6개월초과 1년미만	70
3	1년초과 2년미만	65
4	2년초과 3년미만	60
5	3년초과 4년미만	55
6	4년초과 5년미만	50
7	5년초과 6년미만	45
8	6년초과 7년미만	40
9	7년초과 8년미만	35
10	8년초과 9년미만	30
11	9년초과 10년미만	25
12	10년초과 11년미만	20
13	11년초과 12년미만	15
14	12년초과 13년미만	12
15	13년초과 14년미만	10
16	14년초과 15년미만	7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5호 생략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수급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지역수급계획 중 지역간 장사시설의 수급조정, 장사시설의 공동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지역간 갈등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의 기간·범위·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 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① 제19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 ②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연고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화장·봉안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의 기간·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
- ③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이나 그 밖의 국유지에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수급(需給)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사시설의 수요 변동 추세와 공급 전망
3. 장사시설의 확충계획 및 재정투자계획
4. 장사문화의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계획
5.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계획 및 관리운영계획
6. 그 밖에 장사정책 및 장사시설 수급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계획의 기본방향
2. 관할 구역의 연도별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 및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매장자 수, 화장자 수, 봉안자 수 및 자연장자 수와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4.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존의 장사시설 등의 정비계획 또는 확충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11조에 따른 분묘의 일제 조사와 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 조정,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갈등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

④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의 수립 지침에 따라 중장기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구역별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에 대하여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협의 사항을 확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결과를 다음 종합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된 종합계획에 따라 중장기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장기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받은 중장기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⑩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중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중장기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
·도지사
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
연고 시신 등을 화장하지 아니하고 매장 또는 봉안한 경우에는 화장을
하여야 한다

제23조(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 ① 법 제18조
제4항에 따른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은 다음과 같다.

1.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
하로 한다)
2. 상석 1개
3. 그 밖의 석물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로 한
다). 다만, 인물상은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은 묘지, 봉안묘지 또는 봉안탑 외의 구역에 설
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방법)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를 하는 경우 그 통보 및 공고기간·방법·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묘지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릴 것

가.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나.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다.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라.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

2. 묘지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가.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나.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②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2조제3항에 따른 개장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문 또는 공고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4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

조의4까지,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①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등록기준지
2.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4.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2016년 하반기 구미추모공원(가칭) 개원예정에 따라 화장시설 관리·운영에 따른 세입·세출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화장시설 운영비 산정, 화장수요 및 임대수입금 추정은 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운영·관리 계획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한다.
- 화장시설 사용료는 아래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단가를 적용한다.

구 분	기 준		사 용 료(원)		비 고
			관내	관외	
화장시설	일반 사채	15세 이상(1구)	100,000	600,000	
		15세 미만(1구)	80,000	350,000	
	죽은태아(1구)		40,000	170,000	
	개장유골(1구)		60,000	250,000	

- 2016년은 하반기 개원을 가정하여 세입·세출 모두 4개월분만 반영한다.
- 운영비는 지방공단 단가를 적용하며, 최근 5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2.7%)을 매년 적용한다.
- 추계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화장시설 사용료	138,678	479,246	541,986	605,906	668,686	2,434,502
	소계(a)	138,678	479,246	541,986	605,906	668,686	2,434,502
세출	○ 화장시설 운영비	474,111	1,460,737	1,500,177	1,540,682	1,582,280	6,557,987
	소계(b)	474,111	1,460,737	1,500,177	1,540,682	1,582,280	6,557,987
□ 총 비용(a-b)		-335,433	-981,491	-958,191	-934,776	-913,594	-4,123,485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도 비							
시 비		474,111	1,460,737	1,500,177	1,540,682	1,582,280	6,557,987
민 간							
기 타							
합 계		474,111	1,460,737	1,500,177	1,540,682	1,582,280	6,557,987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사회복지과 이중호
연락처	054-480-5187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세입

- 화장수요 추정(2016년~2020년)

(단위: 구)

구 분		구성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관내	대 인	91.4%	1,048	1,090	1,131	1,171	1,213
	소 인	0.6%	6	7	7	8	8
	개장유골 및 죽 은 태 아	8.0%	2,092	2,095	2,099	2,103	2,106
	소 계	100.0 %	3,146	3,192	3,237	3,282	3,327
관외	대 인	91.4%	292	386	480	575	669
	소 인	0.6%	2	3	3	4	4
	개장유골 및 죽 은 태 아	8.0%	26	34	42	51	59
	소 계	100.0 %	320	423	525	630	732
전 체			3,466	3,615	3,762	3,912	4,059

※ 구미시 화장률 : '12년(67.5%), '13년(73.1%), '14년(76.2%)

※ 구미시 사망자수(3년간 평균 1,509명) : '12년(1,543명), '13년(1,502), '14년(1,484명)

- 임대수입금 추정

(단위: 원)

부대시설	면적(m²)	유사 시가표준액	대부료 요율	임대수입금
용 품 점	19.05	200,000	50/1,000	190,500
각 인 실	19.22	200,000	50/1,000	192,200
식 당	189.02	200,000	50/1,000	1,890,200
매 점	20.34	200,000	50/1,000	203,400
카 페	36.00	200,000	50/1,000	360,000
계	283.63			2,836,300

• 사용요금 수입 추정

(단위: 천 원)

구 분			사용료 단 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사용료수입	관내	대인	100	104,800	109,000	113,100	117,100	121,300
		소인	80	480	560	560	640	640
		개장 및 죽은태아	60	125,520	125,700	125,940	126,180	126,360
		소계		230,800	235,260	239,600	243,920	248,300
	관외	대인	600	175,200	231,600	288,000	345,000	401,400
		소인	350	700	1,050	1,050	1,400	1,400
		개장 및 죽은태아	250	6,500	8,500	10,500	12,750	14,750
		소계		182,400	241,150	299,550	359,150	417,550
	계			391,820	479,470	566,870	655,290	742,690
	임대수입금			2,836	2,836	2,836	2,836	2,836
	총 계			416,036	479,246	541,986	605,906	668,686

2. 세출

• 시립화장시설 연간운영비 산정

(단위: 원)

구 분		직 영(A)	지방공단(B)	차 액(A-B)
인 건 비		720,766,338	688,785,030	31,981,308
경 비	인 적 보 험 료	69,271,278	63,158,970	6,112,308
	수 리 수 선 비	23,085,042	23,085,042	-
	전 력 비	120,000,000	120,000,000	-
	연 료 비	133,744,917	133,744,917	-
	세 금 과 공 과	13,775,700	13,775,700	-
	임 차 료	21,352,335	21,352,335	-
	보 험 료	13,086,915	13,086,915	-
	민 간 위 탁 비	82,000,000	82,000,000	-
	기 타 경 비	195,614,948	195,614,948	-
	경 비 계	671,931,135	665,818,827	6,112,308
순 원 가		1,392,697,473	1,354,603,857	38,093,616
일 반 관 리 비 (5 %)		69,634,873	67,730,192	1,904,681
연 간 운 영 비		1,462,332,346	1,422,334,049	39,998,297

소관 실·과		사회복지과
입 안 자	과 장	최 한 주
	담 당	권 혁 성
	담 당 자	이 중 호 (480-5187)